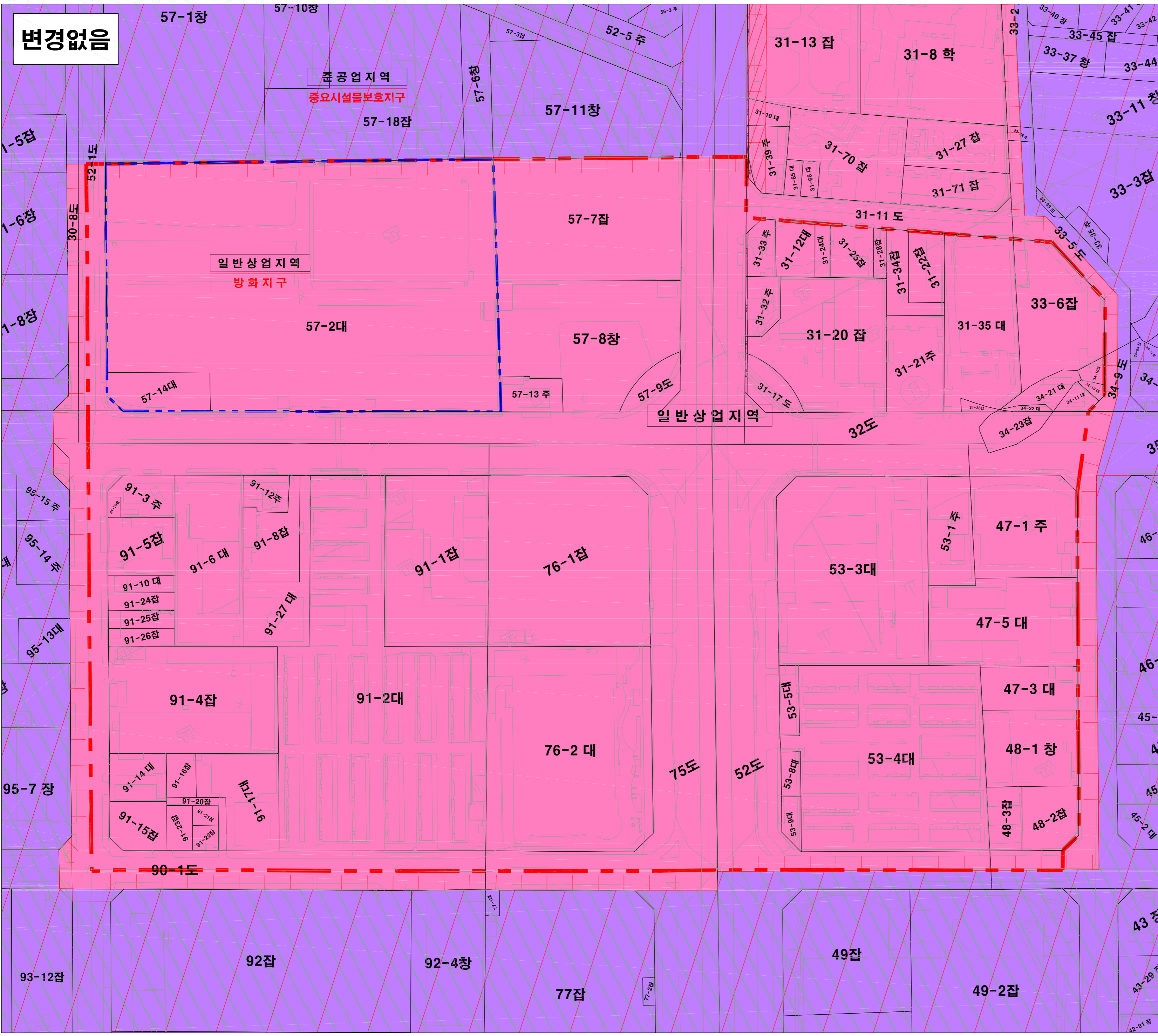


변경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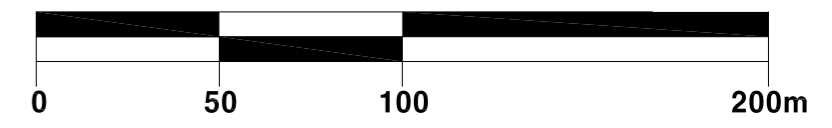
도시관리계획(항동1-1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
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도
- 변경 없음 -

- 지구단위계획구역
- 특별계획구역
- 일반상업지역
- 준공업지역
- 방화지구
- 시가지경관지구
- 중요시설물보호지구



scale : 1:1,5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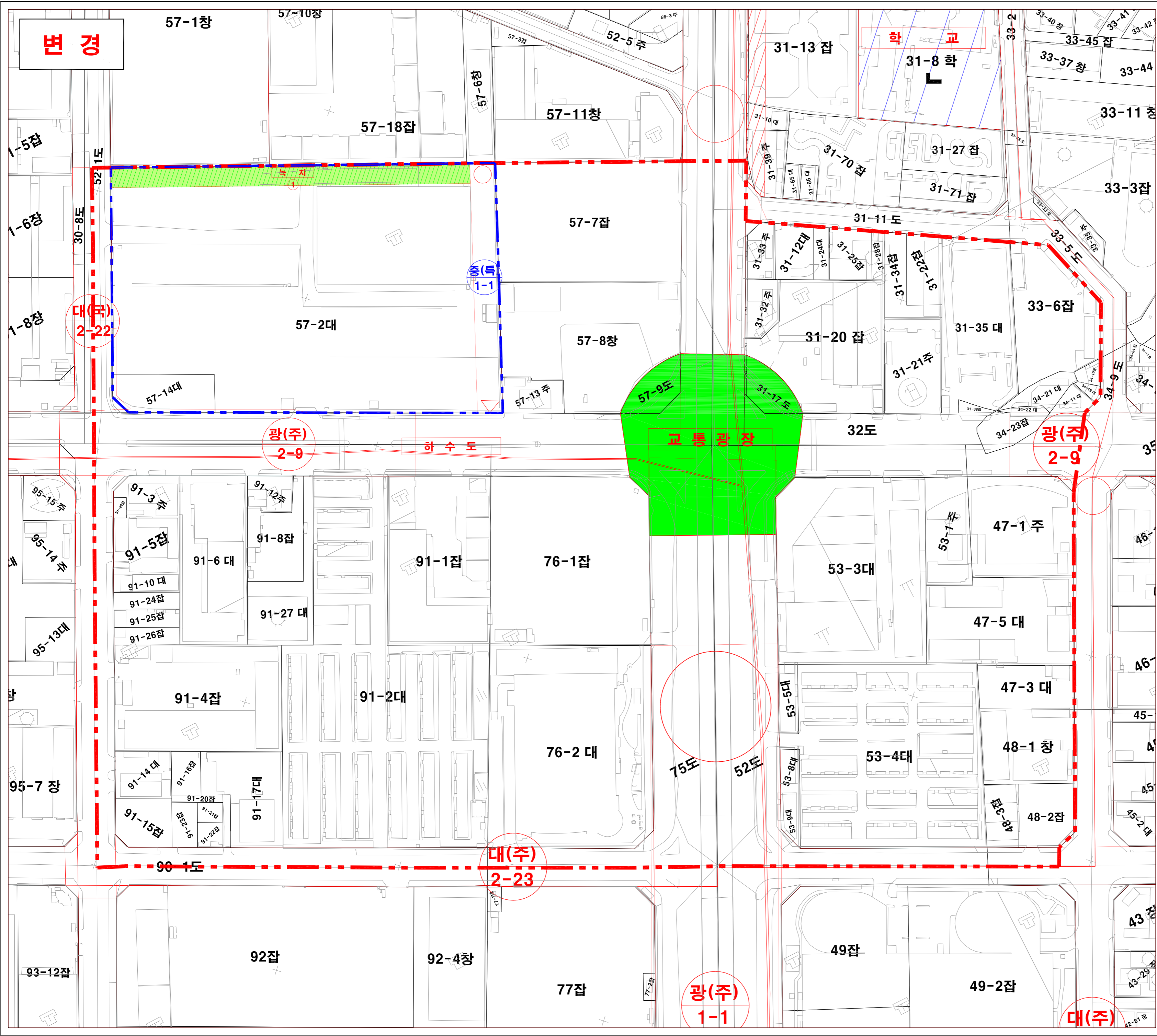


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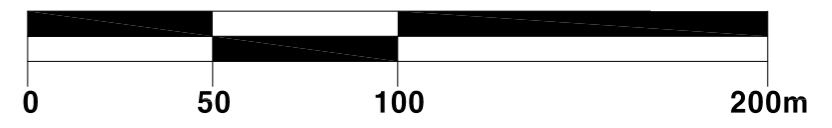
도시관리계획(항동1-1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
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
- 변경 -

-  지구단위계획구역
-  특별계획구역
-  도로
-  녹지
-  광장
-  하수도
-  학교



scale : 1:1,50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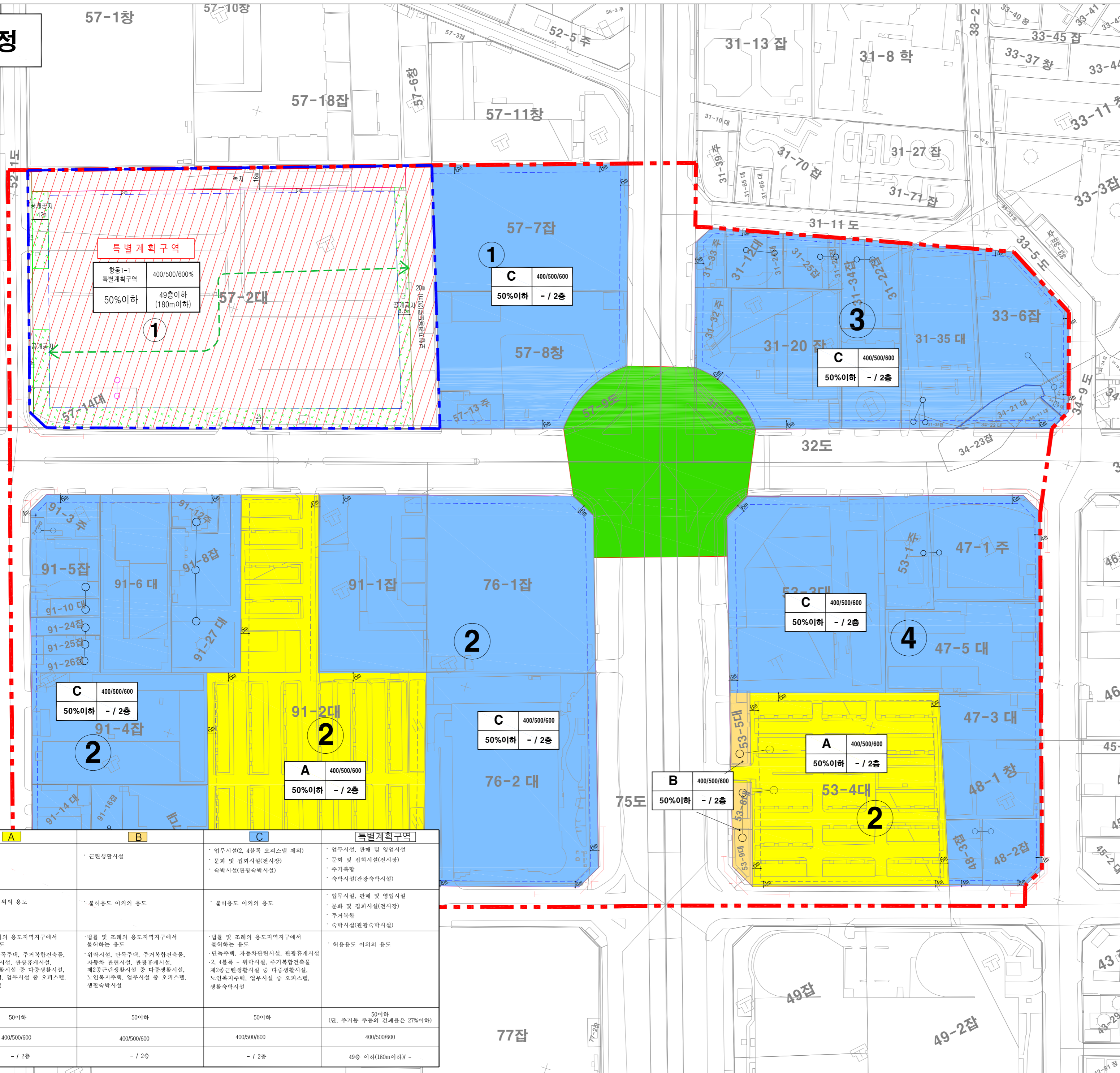
기 정

도시관리계획(항동1-1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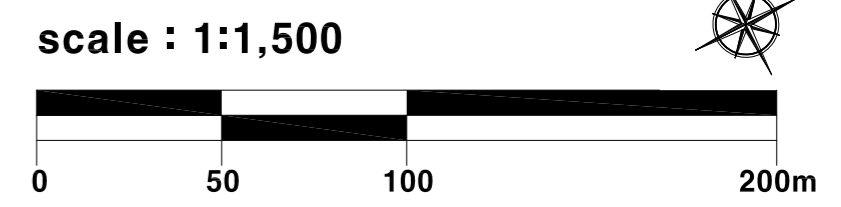
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- 기 정 -

- 지구단위계획구역
- 특별계획구역
- 가구선
- 획지선
- 가구번호
- 공동개발(권장)
- 공동개발(지정)
- 건축한계선
- 차량출입불허구간
- 공개공지
- A용도
- B용도
- C용도
- 광 장
- 보행자동선

용도구분	기준/허용/상한 용적률
건 폐 을	최고 / 최저높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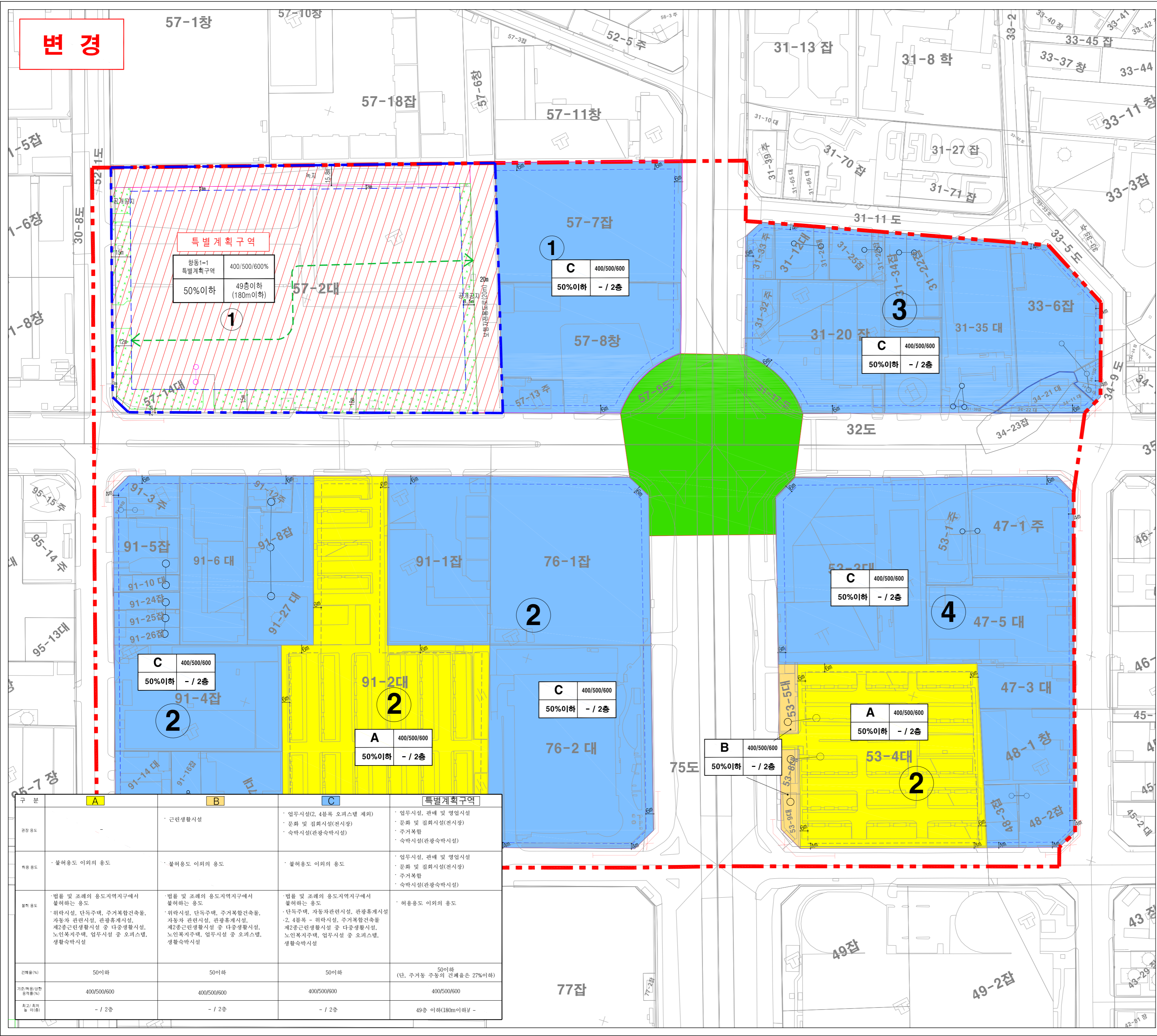
구 분	A	B	C	특별계획구역
권장 용도		· 근린생활시설	· 업무시설(2, 4분류 오피스텔 제외) ·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) · 숙박시설(관광숙박시설)	· 업무시설, 판매 및 영업시설 ·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) · 주거복합 · 숙박시설(관광숙박시설)
허용 용도	·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·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·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· 업무시설, 판매 및 영업시설 ·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) · 주거복합 · 숙박시설(관광숙박시설)
불허 용도	· 법률 및 조례의 용도지역지구에서 불허하는 용도 · 위락시설, 단독주택, 주거복합건축물, 자동차 관련시설, 관광휴게시설,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, 노인복지주택,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, 생활숙박시설	· 법률 및 조례의 용도지역지구에서 불허하는 용도 · 위락시설, 단독주택, 주거복합건축물, 자동차 관련시설, 관광휴게시설,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, 노인복지주택,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, 생활숙박시설	· 법률 및 조례의 용도지역지구에서 불허하는 용도 · 위락시설, 단독주택, 주거복합건축물, 자동차 관련시설, 관광휴게시설,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, 노인복지주택,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, 생활숙박시설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(%)	50이하	50이하	50이하	50이하 (단, 주거용 주택의 건폐율은 27%이하)
기준/허용/상한 용적률(%)	400/500/600	400/500/600	400/500/600	400/500/600
최고/최저 높이(층)	- / 2층	- / 2층	- / 2층	49층 이하(180m이하) / -



변경

도시관리계획(항동1-1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- 변경 -



- 지구단위계획구역
- 특별계획구역
- 가구선
- 획지선
- ① 가구번호
- 공동개발(권장)
- 공동개발(지정)
- 건축한계선
- 차량출입불허구간
- 공개공지
- A용도
- B용도
- C용도
- 광 장
- 보행자동선

용도구분	기준/허용/상한 용적률
건 폐 을	최고 / 최저높이

특별 계획 구역	
항동1-1 특별계획구역	400/500/600%
50%이하	49층이하 (180m이하)

1	C	400/500/600
	50%이하	- / 2층

3	C	400/500/600
	50%이하	- / 2층

2	C	400/500/600
	50%이하	- / 2층

2	A	400/500/600
	50%이하	- / 2층

2	C	400/500/600
	50%이하	- / 2층

2	B	400/500/600
	50%이하	- / 2층

2	A	400/500/600
	50%이하	- / 2층

구 분	A	B	C	특별계획구역
규정 용도		근린생활시설	업무시설(2, 4분류 오피스텔 제외)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) 숙박시설(관광숙박시설)	업무시설,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) 주거복합 숙박시설(관광숙박시설)
허용 용도	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업무시설,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) 주거복합 숙박시설(관광숙박시설)
불허 용도	'법률 및 조례의 용도지역지구에서 불허하는 용도' 위락시설, 단독주택, 주거복합건축물, 자동차 관련시설, 관광휴게시설,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, 노인복지주택,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, 생활숙박시설	'법률 및 조례의 용도지역지구에서 불허하는 용도' 위락시설, 단독주택, 주거복합건축물, 자동차 관련시설, 관광휴게시설,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, 노인복지주택,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, 생활숙박시설	'법률 및 조례의 용도지역지구에서 불허하는 용도' 위락시설, 단독주택, 주거복합건축물, 자동차 관련시설, 관광휴게시설,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, 노인복지주택,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, 생활숙박시설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(%)	50이하	50이하	50이하	50이하 (단, 주거용 주택의 건폐율은 27%이하)
기준/허용/상한 용적률(%)	400/500/600	400/500/600	400/500/600	400/500/600
최고/최저 높이(층)	- / 2층	- / 2층	- / 2층	49층 이하(180m이하) / -

scale : 1:1,500

